

#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학생회 회칙

## 전 문

대학이란 학문, 사상의 자유를 바탕으로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여 민주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실천적 지성인의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우리 대학생들은 일제의 민족해방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중항쟁, 87년 6월의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애국 전열의 숭고한 정신과 혼을 이어받아 이 땅의 민족 자주성의 실현, 민주사회의 건설, 그리고 분단된 조국의 하나 됨과 이 학원내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하고 완전한 자주화를 위해 헌신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이에 우리 호텔관광대학 청년 학생은 자신의 삶, 학원, 그리고 사회의 주인 됨을 실현하고자 경희 호텔경영전문대학 총학생회를 계승하여 1999년 호텔관광대학 학생회를 건설하였다. 호텔관광대학 학생회는 지속적인 학생회의 강화와 다양해진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학생회의 위상 정립과 그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학생회라 칭한다.(이를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과 창조적, 비판적 학문 연구를 통하여 올바른 대학문화의 창달과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며, 학원의 자주화, 경희 발전, 나아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경희 학생들의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로서 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애국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본회는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내에 둔다.

### 제4조 (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정회원은 경희대 호텔관광대학의 모든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생은 준회원의 권한을 가지며, 준회원의 권한은 회칙에 명시한다.

② 단, 준회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학생회칙 제1장 제9조에 의거하여 정회원의 승급이 가능하다.

##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② 정회원과 준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와 모든 자치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준회원의 자치활동에는 학생회 대표자를 제외한 여타 학생회 간부로서의 활동 또한 포함된다.
- ③ 본회의 모든 정회원과 준회원은 본회를 지켜내고 본회의 활동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하며, 회칙준수 및 사업 진행의 의무를 지닌다.
- ④ 정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제6조 (기구)**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이하 '전학대회'라 한다.), 운영위원회, 과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학회연합회, 유학생회를 둔다. 단,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기구를 본회의 의결방식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목적 달성 시에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 제7조 (연대활동)

- ① 본회는 그 목적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학내외의 다른 여타 단체의 가입, 인사접촉 등 연대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② (가입과 탈퇴) 본회는 다른 단체에 가입, 탈퇴 시 전학대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학교 당국과의 관계)** 본회는 자치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회의 각 기구가 적절한 절차를 걸쳐 학교 당국과 협의, 협상할 수 있다.

## 제9조 (준회원의 정회원 승격)

- ① 자격 및 대상 : 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앞으로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준회원
- ② 승격절차와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등록 기간 : 해당연도 선거공고예정일로부터 최대 30일 이전부터 최소 선거공고일 전날까지.
  2. 등록 장소 :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학생회실
  3. 구비 서류 : 가. 휴학증명서  
나. 정회원 승급 신청서 (소정양식)
  4. 등록 방법 : 등록기간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학생회실에 서류를 제출한다.
  5. 승인 절차 : 서류접수 이후 등록마감일 시점으로 다음 호텔관광대학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정회원 등록에 대하여 심사하여 참석인원의 2/3이상의 동의함으로써 준회원의 정회원 승급여부를 판단한다.
  6. 통보 절차 : 호텔관광대학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정회원승급에 대한 동의여부는 승급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핸드폰번호와 이메일 등)로 통보해야 한다.
  7. 이의 신청 : 준회원의 정회원 승급 판단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기간은 승급여부에 대한 통보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이며, 호텔관광대학 학생회장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호텔관광대학 학

생회장은 이의신청자에게 판단여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호텔관광 대학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에서 참석인원의 2/3이상의 동의를 통해 승급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이를 기재된 연락처로 통보해야 한다.

8. 승급 기간 : 준회원의 정회원 승급절차를 통해 승급된 정회원의 경우, 승급 동의 통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본회의 정회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며, 만료기간은 해당학기의 정회원과 같은 기간까지로 정의한다.

## 제2장 학생총회

**제10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1조 (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정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 제12조 (의장)

①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된다.

②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의 소추가 있거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모두 궐위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자가 학생총회를 진행한다.

**제13조 (권한)** 학생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① 학생총회는 본회 운영전반 및 회원전체에 관한 중대한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상정한 사안에 대하여 의결한다.

### 제14조 (소집)

① 정기총회 매 학기 초에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학생회장, 정회원 1/10이상의 요구, 전학대회나 운영위원회의 재적인원 과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 회의소집은 소집이유를 명시하여 최소 회의 개최 일주일 이전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임시총회의 경우는 소집이유를 명시하여 3일 이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 제15조 (개회 및 의결)

① 학생총회는 정회원 1/70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인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부학생회장의 탄핵은 정회원 과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생총회의 무산, 기타 사유로 의결할 수 없을 시에는 정·부 학생회장의 탄핵을 제외하고 그 권한을 전학대회로 위임한다.

## 제3장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 제16조 (지위)

- ①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 의장, 전학대회 의장, 운영위원회 의장, 상임집행위원회 의장이 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책임을 진다.
- ② 학생회장은 본회의 활동 및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학교당국을 비롯한 학내의 여타단체의 회의에 학생대표로 참석한다.
- ③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 궐위 시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 (임기)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8조 (신분보장)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 ① 학생총회에 의한 탄핵
- ② 전학대회와 학생총회에서 1/2의 찬성으로 총투표를 결의했을 시 그 총투표의 실시로 탄핵이 결정되었을 때

### 제19조 (업무 및 권한)

- ① 학생회를 구성하는 간부들을 추천하여 전학대회의 인준을 거쳐 이를 임명한다.
- ② 학생총회, 전학대회, 운영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 ③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 ④ 본회와 학생전체에 주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할 특별기구의 구성안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 ⑤ 회칙개정안을 발의하여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 ⑥ 학생총회, 전학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 중에서 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 ⑦ 학교당국을 비롯한 학내의 여타 단체와의 회의에 학생대표로 참석하여 심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 ⑧ 그 밖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 제4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20조 (지위)** 전학대회는 학생총회의 최고의사결정을 위임받는 기구이다.

**제21조 (구성)** 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정·부학생회장, 각 과 정·부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학회연합회장, 정·부유학생회장,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특별위원장, 각 과 학년별 대표로 구성한다. 단, 한 학년 기준정원 100명 이상의 학년은 100명 단위로 1명의 비례대표자를 추가 선출할 수 있다.

### 제22조 (의장)

- ① 의장은 전학대회 운영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전학대회를 대표한다.
- ② 의장은 학생회장이 겸임하며, 학생회장 궐위 시 부학생회장이 대행한다.
- ③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의 소추가 있거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모두 궐위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자가 전학대회를 진행한다.

**제23조 (임기)** 전학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본회의 회기연도에 준한다.

### 제24조 (업무 및 권한)

- ① 본회의 활동방향성,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를 심의, 의결한다.
- ② 학생임시총회의 소집을 심의, 의결한다.
- ③ 본회의 회비 책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④ 정·부 학생회장의 탄핵소추를 심의해서 학생총회에 상정하며,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탄핵을 위한 총투표를 발의한다.
- ⑤ 회칙개정을 발의하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 ⑥ 학생회비의 책정을 심의해서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 ⑦ 감사소위원회의 활동을 보고 받는다.
- ⑧ 필요시 자체 특별기구의 설립 절차를 심의, 의결한다.
- ⑨ 학생총회에서 위임받은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 ⑩ 기타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 ⑪ 본회의 재정 운용에 관한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제25조 (소집)** 전학대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 ① 정기총회는 1학기 초, 2학기 초, 2학기 말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의장 또는 재적인원 1/5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과반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 제26조 (개회 및 의결)

- ① 전학대회는 재적인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일반정족수) 제24조에 규정된 전학대회의 의결사항 중 1, 2, 3, 10, 11항은 재적인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특별정족수) 제24조에 규정된 전학대회의 의결사항 중 4, 5, 6, 7, 8, 9항은 특별정족수를 설정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 제5장 운영위원회

**제27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운영기구이다.

**제28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호텔관광대학 정·부학생회장, 각 과 정·부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학회연합회장, 정·부유학생회장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실무진을 배석할 수 있다.

**제29조 (의장)** 의장은 학생회장이 겸임하며, 학생회장 퇴임 시 부학생회장이 대행한다.

### 제30조 (업무 및 권한)

- ① 학생회의 제반사업을 검토, 조정, 심의하여 전학대회,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 ② 학생회의 전체예산과 결산안을 검토, 조정, 심의하여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 ③ 학생회의 업무수행을 전반적으로 검토, 조정, 심의하여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 ④ 전학대회, 학생총회의 소집을 심의, 의결한다.
- ⑤ 회칙개정 발의와 발의안을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 ⑥ 본회 운영에 필요한 특별기구의 설치를 발의하여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 ⑦ 필요시 자체 특별기구의 설치를 심의, 의결한다.
- ⑧ 전학대회에서 위임받은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 ⑨ 학생회 간부에 대한 출석요구를 심의, 의결한다.
- ⑩ 학간 연대조직에 참석, 의결한다.
- ⑪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 ⑫ 당해연도 선거 일정에 대해서 검토하여 전학대회에 보고한다.

**제31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제32조 (의결)

- ① 운영위원회는 과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결권은 호텔관광대학 정·부학생회장, 각 과 정·부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학회연합회장, 정·부유학생회장으로 한다.

## 제6장 위임

**제33조 (목적)** 본 회칙은 본회의 운영에 있어서 각종 회의의 위임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둔다.

**제34조 (위임의 조건)** 운영위원회, 전학대회 등 본회의 각종 회의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자격심사를 거쳐 각각의 체계상의 역할에 맞게 위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35조 (피위임자의 범위)

- ① 운영위원회의 위임에서 피위임자의 자격은 해당 단위의 직선간부로 한다. 단, 회의 24시간 전에 해당회의 의장에게 위임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 ② 전학대회에는 위임에 불가하다. 관혼상제, 천재지변 등 불참 사정이 있거나 단위 총회 등 중요한 행사가 있을 시에는 해당 회의 구성원들이 심의하여 위임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 제7장 상임집행위원회

**제36조 (지위)** 상임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집행 심의기구이다.

**제37조 (구성)** 상임집행위원회는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이 학생회 중앙간부들로 임명하여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서 인준받는다. 특별상설기구 대표는 필요에 의해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실무진이 배석할 수 있다.

**제38조 (임기)** 상임집행위원회의 임기는 본회의 회기연도에 준한다.

### 제39조 (업무 및 권한)

- ① 학생총회, 전학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학생회 간부회의에 제출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실무적, 정책적 보좌를 담당한다.

## 제8장 집행위원회

**제40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집행기구이다.

**제41조 (구성)**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및 정·부학생회장이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인준을 받는다.

**제42조 (임기)** 집행위원회의 임기는 본회의 회기연도에 준한다.

**제43조 (업무 및 권한)** 본회의 상임집행위원회에서 계획한 사업을 집행한다.

## 제9장 비상대책위원회

**제44조 (설치 및 임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1. 정·부학생회장 선거 무산
2. 정·부학생회장 탄핵
3. 기타 그에 준하는 정·부학생회장 궐위의 상태

②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본회의 회기연도에 준한다. 단, 보궐선거에서 차기 정·부학생회장이 선출된 경우, 선거 이의제기 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를 임기로 한다.

**제45조 (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궐위 기간 동안 본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 집행기구이다.

**제46조 (구성)**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집행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 시 부비상대책위원장을 둘 수 있다.

#### **제47조 (비상대책위원장 및 부비상대책위원장)**

① 4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아 호텔관광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또는 부비상대책위원장이 될 수 있다.

1. 호텔관광대학 운영위원회 구성원이었던 자
  2. 호텔관광대학 상임집행위원회 구성원이었던 자
  3. 호텔관광대학 집행위원회 구성원이었던 자
- ② 비상대책위원장은 차기 정·부학생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그 직무와 의무를 대행하여 호텔관광대학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 ③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 운영을 위해 집행위원을 모집할 수 있다.
- ④ 비상대책위원장은 보궐선거 및 재선거를 실시해야한다.

#### **제48조 (업무 및 권한)**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의 집행기구와 준하는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 ②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단, 모든 업무 및 권한은 본회 회칙에 명시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대표자 선출과 필수적인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 **제49조 (해산)**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해야 한다.

- ① 차기 정·부학생회장이 선출된 경우 (11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경우, 당해연도 12월 31일에 해산한다.)
- ② 회기연도 임기가 종료된 경우

### **제10장 특별대표기구**

#### **제50조 (구성)** 본회는 회칙에 의거하여 특별대표기구로 동아리연합회와 학회연합회를 둘 수 있다.

#### **제51조 (권한과 의무)**

- ① 특별기구장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운영위원회와 전학대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 ② 특별기구위원장은 전학대회 대의원 자격을 가진다.

#### **제1절 동아리연합회**

**제52조 (지위)** 동아리연합회는 전 동아리 회원의 민주적 자치를 위한 대표기구이다.

**제53조 (구성)**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동아리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4조 (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위원회, 전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제55조 (업무 및 권한)** 동아리 연합회의 자치활동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56조 (자치내규)** 동아리 연합회의 자주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타사항은 학생회의 회칙을 위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한 동아리 연합회의 회칙에 따른다.

## 제2절 학회연합회

**제57조 (지위)** 학회연합회는 전 학회 회원의 민주적 자치를 위한 대표기구이다.

**제58조 (구성)** 학회연합회는 학회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학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9조 (회장단)** 학회연합회장은 학회연합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위원회, 전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제60조 (업무 및 권한)** 학회연합회의 자치활동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61조 (자치내규)** 학회연합회의 자주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타사항은 학생회의 회칙을 위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한 학회 연합회의 회칙에 따른다.

## 제11장 임시 특별기구

**제62조 (지위 및 구성)** 본회의 운영에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회장이나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본회의 의결방식에 따라 구성되며, 목적달성 시에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제63조 (권한)** 임시 특별기구의 장은 기구의 존립 기간 동안 운영위원회, 전학대회의 대의원의 자격을 지닌다.

## 제12장 단과대 학생회

**제64조 (지위)** 단과대 학생회는 단과대의 최고학생기구이다.

**제65조 (구성)** 단과대 학생회는 단과대 재학생 전원으로 한다.

**제66조 (회장단)** 단과대 정·부학생회장은 각 과 학생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위원회, 전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제67조 (업무 및 권한)** 단과대 학생회는 학생회칙에 따라 자치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68조 (자치내규)**

- ① 단과대 학생회의 자주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타사항은 학생회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
- ② 상기 회칙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관례에 따른다.

### **제13장 과학생회**

**제69조 (지위)** 과학생회는 각 과의 최고학생기구이다.

**제70조 (구성)** 과학생회는 각 과 재학생 전원으로 한다.

**제71조 (회장단)** 각 과 정·부학생회장은 각 과 학생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위원회, 전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제72조 (업무 및 권한)** 각 과학생회는 각 과 학생회칙에 따라 자치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73조 (자치내규)**

- ① 각 과학생회의 자주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타사항은 학생회의 회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한 각 과학생회의 회칙에 따른다.
- ② 상기 회칙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관례에 따른다.

### **제14장 유학생회**

**제74조 (지위)** 유학생회는 최고유학생기구이다.

**제75조 (구성)** 유학생회는 호텔관광대학 정회원 유학생 전체로 구성한다.

**제76조 (회장단)** 정·부 유학생회장은 유학생을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위원회, 전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제77조 (업무 및 권한)** 유학생회는 유학생회칙에 따라 자치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78조 (자치내규)**

① 유학생회의 자주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타사항은 학생회의 회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한 유 학생회의 회칙에 따른다.

② 상기 회칙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관례에 따른다.

## 제15장 재정

**제79조 (재원)** 본 회의 재정은 학생 자치회비와 학생회비, 교비,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제80조 (회계연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만 1년으로 한다.

② 2학기 말 전학대회 개회일부터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까지의 집행 내역은 다음 회계연도 첫 전학대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는다.

### 제81조 (자치회비)

① 자치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는 금액이다.

② 자치회비는 본회의 운영, 사업, 홍보 등에 사용된다.

③ 본회의 자치회비 분배율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한다.

④ 본회 자치회비는 전학대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⑤ 자치회비의 출납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 제82조 (학생회비)

① 학생회비는 호텔관광대학 재학생 및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금액이다.

② 학생회비는 본회의 운영, 사업, 홍보 등에 사용된다.

③ 본회의 학생회비는 전학대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④ 학생회비의 출납사항은 호텔관광대학운영위원회와 학과 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 제83조 (교비)

① 교비는 경희대학교 대학본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다.

② 교비는 본 회의의 운영, 사업, 홍보 등에 사용된다.

- ③ 본회에서 사용하는 교비는 전학대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④ 매년 단과대학 행정실과 자율예산운영위원회를 통해 세부 내역을 증빙한다.
- ⑤ 교비의 출납사항은 호텔관광대학 본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 **제84조 (기타수익금)**

- ① 기타수익금은 본회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모든 금액이다.
- ② 기타수익금은 호텔관광대학 학생회의 운영, 사업, 홍보 등에 사용된다.
- ③ 기타수익금의 출납사항은 별도의 증빙서류 및 결산안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제85조 (관리 및 지출)** 교비, 자치회비의 징수 및 관리는 학교당국에 위임하되 인출 및 집행은 본회 해당기구의 요청이 있을 시 학생회장의 결재에 따른다.

#### **제86조 (예산)**

- ① 본회는 교비 연간 예산안, 자치회비 학기별 예산안을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검토 및 전학대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본회의 교비를 배분받는 기구는 연간 예산안을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검토 및 전학대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예산을 제출 받은 운영위원회는 소집 후 10일 이내에 예산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단, 제출된 예산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할 수 있다.

#### **제87조 (준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

- ① 예산안 의결 이전에 예산집행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또는 예산이 기일 내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단, 전학대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예산 수립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통과된 예산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전학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8조 (결산)**

- ① 본회는 교비와 자치회비 학기별 결산안을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검토 및 전학대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본회의 교비를 배분받는 기구는 학기별 결산안을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검토 및 전학대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9조 (발의)** 재정에 관한 의문이 제기 되었을 때 전학대회에서 감사위원회를 구성을 발의, 구성할 수 있다.

#### **제90조 (구성)**

- ① 전학대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다.
- ② 위원은 위원장 추천 1인, 운영위원회 추천 1인, 공개 모집 2인 등 총 5명내로 구성한다.
- ③ 감사권은 어떤 기구로도 위임할 수 없다.

**제91조 (감사대상)** 자치회비 분배를 받는 기구에 한해 감사를 받는다.

**제92조 (감사절차)** 감사위원은 2주 이내에 재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위원은 감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대상 기구는 이에 성실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93조 (기타)**

- ① 감사의 결과에 따라 전학대회의 의결에 의해 임시 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감사의 결과는 각 기구장의 탄핵의 명분이 된다.
  1. 학생회(장)와 특별기구(장)의 탄핵은 본회의 절차를 따른다.
  2.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 등 본회의 제반권리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며, 처벌은 운영위원회에 일임한다. 권리의 복귀는 소명의 절차를 거쳐 전학대회의 의결을 따른다.

#### **제94조 (감사의 공개와 추인)**

- ① (공개의 원칙) 감사 결과는 감사 직후부터 대자보, 인터넷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다음 전학대회 때까지 공지한다.
- ② (감사결과의 추인)
  1. 다음 전학대회 대의원에서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감사결과를 추인받는다.
  2. 추인이 부결되었을 경우 감사위원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 1개월 내에 재 감사를 실시하여 전학대회에 재 상정한다.
- ③ (해산) 다음 학기 첫 전학대회에서 감사 결과가 추인 될 경우에 자동 해산한다.

## **제17장 개인정보 관리**

**제95조 (책무)** 단과대, 과학생회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자료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금한다.

**제96조 (교육)** 단과대, 과학생회는 매년 신입 구성원 선발 후, 개인정보 관리교육을 실시한다.

**제97조 (관리)** 개인정보 관련 파일은 암호화하여 보관한다.

**제98조 (징계)** 개인정보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과반 이상의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관련 학생을 학생회에서 제명한다.

## 제18장 선거

**제99조 (선거권)** 본회 정회원은 모든 선거권을 가진다.

**제100조 (피선거권)** 본회의 피선거권은 다음의 각 항을 갖춘 자에 한한다.

①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1.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2. 정회원 1/1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② 기타 각 기구장으로 선거는 단위 회칙에 따른다.

**제101조 (선거방법)**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한다.

**제102조 (선거시기)** 선거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전학대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당해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적정시기에 시행한다.

### 제103조 (입후보 및 당선)

- ① 본회의 정·부학생회장은 공동 입후보하여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직접선거로 최다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재적인원 산출은 선거최초 시작일 투표 시작 시 재적인원으로 한다.
- ②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에 한하여 개표확인 후 1주일 이내에 재 투표로 당선을 결정한다.
- ③ 단독 출마인 경우에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 ④ 투표율이 정회원 수의 과반수 미만일 시에는 연장투표를 이를 이내로 실시할 수 있다.
- ⑤ 기타 각 기구장의 당선은 단위 회칙에 따른다.

### 제104조 (보궐선거 및 재선거)

- ① 정·부학생회장 모두 특별한 사유로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월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보궐선거 실시를 중단하

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② 정·부학생회장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③ 기타 각 기구장의 보궐선거와 재선거는 단위 회칙에 따른다.

**제105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전학대회 의장은 선거 25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호선된 1인과 각 학부/과 학생회장이 추천하는 1인씩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해당 운영위원이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 기간 만료와 함께 해산한다.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 기간은 선거시행 세칙에 명시하도록 한다.

③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학생회비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06조 (선거시행세칙)** 모든 선거는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며 선거시행세칙은 당해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

## 제19장 회칙

**제107조 (발의)** 회칙개정안은 정회원 1/20이상의 요구나 학생회장, 전학대회,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발의한다.

**제108조 (공고)**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전학대회의 의장이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30일 이내에 전학대회를 소집, 의결하여야 한다.

**제109조 (의결)**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전학대회의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0조 (공포)**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전학대회 의장이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111조 (효력)** 개정된 회칙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제1조 (시행)** 본회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 (본 회칙에 의하여 선거방법이나 인원이 변경된 경우)** 본 회칙의 효력 발생 이전에 구성된 모든 자치기구의 임원은 그 임기 만료시까지 전 회칙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3조 (관례)**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단, 이로 인하여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회의 의결방식에 따라 결정한다.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학생회 정회원 승급 신청서

신청자 개인정보			
이름		학과(부)	
학번		이수 학기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휴학관련 정보			
휴학유형			
휴학기간	(휴학 증명서상 휴학 기간 기재)		
휴학목적			
복학예정시기			
정회원 승급 신청 사유			
신청 사유			
비고			

- 정회원 승급 여부는 호텔관광대학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재된 연락처로 통보됩니다.
  - 신청자 본인은 정회원 승급 신청을 통해 발생하는 호텔관광대학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정회원 승급과 관련되어 추후 발생하는 일에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신청일자 ( )년 ( )월 ( )일

신청자 (인)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운영위원회

## 학생회칙 개정 이력 관리대장